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4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2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홍보기획관 최원석)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방송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주도의 언론으로 독립경영 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2024.1.1.字 시행 예정임.

- 그러나 조례 시행 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8517호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에서 “2024년 6월 1일” 로 5개월 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Ⅲ.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서울시는 지난 11월 9일 TBS의 기관 혁신 및 안정적 독립경영 준비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시행일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출되었음.

나. 개정안 제출의 배경 및 적정성

(1) 제출 배경

- 미디어재단TBS는 1990년 6월 서울시 사업소로 개국하여 운영돼 오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2020년 2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음.
-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의 반복되는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교통 전문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2022년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2월 서울시가 공포함으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서울시는 지난 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 당시 인건비에 해당하는 232억원만을 ‘미디어재단TBS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5월 재단의 혁신안을 이행하겠다고며 7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음.
- 다만 혁신안의 실제 발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지 2주 뒤에야 공개되었고, 그 내용에는 과거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의회 등 각종 규제·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와 지적에 대한 이행사항이 빠져 있어 공감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음.
- 또한 지난 11월 1일,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시의회의 시간이지 않을까 판단한다”라며 폐지조례 공포 후 1년 간 이어오던 관리·감독자로서의 해태와 부작위를 서울시의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와 공식적인 소통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독립경영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보도 자료를 통해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 간 연장 요청하는 등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여 오다 뒤늦게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2) 안건 제출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은 의안제출을 위한 사전절차 및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로서 ‘긴급성’ 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규제심사, 비용 추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의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및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규정에 따라 금번 제321회 정례회의 안건 제출 마감일은 지난 10월 16일이었으나 서울시는 사안의 긴급성을 사유로 각종 관계부서 간 협의와 사전절차를 3일만에 끝내고 제321회 정례회 중 본회의 개최일인 12월 20일 동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음.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2년 12월 폐지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 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에 TBS 관련 안건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금번 회기 중인 2023년 11월 6일 시행일 연기요청 보도자료 및 9일 공문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바, 동 개정안의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공정성 논란의 해소 여부 확인

- 지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특정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자료제출 기준일(2023.9.30.)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29회에 달하는 행정지도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방송이 종료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 관련 내부감사 및 인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함.
- TBS는 2023년 4월 19일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단 방송심의회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방송심의시스템을 보완·강화하기로 하였으나, 4월 19일 이후 제재 건수가 22회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출연자별 계약서 제5조는 출연자의 의무로 “연출자의 관리·통제 이행”을 명시해 놓은 바, 이에 따라 방송 중 출연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 개인적 일탈과는 별개로 연출자가 출연자에 대한 관리·통제를 적절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제재조치가 120회 이상 발생하는 중 연출자가 받은 감사 건수는 단 2회에 그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징계도 경징계로 끝나는 등 연출자의 관리·통제가 재단 자체적으로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행정적 과오나 단순 실수가 아닌 경영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흠결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논란은 출연자의 개인적 일탈 외에도 행정 및 경영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출연자의 성향에 따라 공정성 논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임.

(4) 부칙 규정의 적정성

- 개정안은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간 유예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정해제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 퇴직급여, 조기희망퇴직수당, 각종 행정절차 검토·이행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5개월 간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서울시의 해태 및 부작위에 따라 안건의 제출·상정·회부가 동시에 이루어져 동 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 만큼 시행일 유예기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개정안에 따른 유예기간 이후 추가 변동이 없는 것인지?
- 답변 : 없을 것임.
- 질의 : TBS의 현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답변 : 주의하겠음.
- 질의 : 비용추계상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 답변 : 제출된 비용만 출연할 것임.
- 질의 : 당해 의사일정이 추진된 것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해 주기 바라며, 그간의 책임자의 발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 답변 : 홍보기획관의 불찰이라고 생각함.
- 질의 : 2023년도 퇴직급여충당금이 정상 불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답변 : 검토하겠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1504
------------	------

제출년월일 : 2023년 12월 2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방송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주도의 언론으로 독립경영 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2024.1.1.字 시행 예정임
- 나. 그러나 조례 시행 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일로 5개월 유예함(부칙 제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관리 필요사업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 생략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안주희 (☎2133-644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517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부칙 제1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4년 6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24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u>2024년 6월 1일</u>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재단 출연금

- 조례 폐지 시행일 5개월 유예에 따라 지정해제 전까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제4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 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가격기준 : 2024년 TBS 예산편성안 및 사업계획
- 추계기간 : 2024.1.1.~2024.5.31

3. 비용추계의 결과 : 출연금 9,297,697천원

4. 재원조달 방안 : 市 출연금 및 TBS 자체수입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안주희(2133-6442)

II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인 건 비 : 7,295,528천원(퇴직급여충당금, 조기희망퇴직수당 등)

※ 편성인원 기준 180명, 조기희망퇴직 112명 별도

2. 기본경비 : 664,298천원(4대 보험료)

3. 청사유지비 등 : 1,337,871천원(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